

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6
----------	--------

2023. 3. 20.
도시교통위원회

1. 수정이유

제2조의2(도로점용허가 대상)제1항제2호 및 별표(점용료 산정기준) 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혼동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2조의2제1항제2호(도로점용허가 대상) 중 “지역경제 활성화”를 삭제함.
- 나. 별표(점용료 산정기준) 중 “지역경제 활성화”를 삭제하고 “다만, 고정시설물 제외”를 추가하여 수정함.

남양주시 조례 제 호

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2호 중 “지역경제 활성화, 「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」”를 “「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의2(도로점용허가 대상) ①</p> <p>「도로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지역경제 활성화, 「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」</u>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</p>	<p>제2조의2(도로점용허가 대상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「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」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【별표】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점용단위	기간단위	
<p>「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특화거리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점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(다만, 고정시설물 제외)</p>	<p>점용면적 1제곱미터</p>	<p>1년</p>	<p>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</p>